

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(신고)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변경신고 3일
운용기관	명칭	전화번호	
	소재지		
소유자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	
구급차등 구분	[] 특수 구급차, [] 일반 구급차, [] 선박, [] 항공기		
	공통	등록번호	
		제작연도	
	구급차	차대번호	
자동차 최초등록일			
변경 사항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사유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통보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소유자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제출서류	1.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2. 「항공안전법」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(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「선박법」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	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